

문화학원 학생회관

이용규칙

## 1.목적

본 학생회관 이용규칙은 학생 여러분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충실한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생은 본학원의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덧붙여, 학생회관의 특성상 매년 4 월을 시기로 하는 1년 계약이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3 월 이외의 퇴관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2.시설 · 설비등 이용에 대하여

※운영상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실 운영	AM7:00 ~ PM11:00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택배물의 수령이나 각종 신고나 연락 등은, 시간 내에 끝내 주세요. (기숙사장·기숙사모는 (株) 共立メンテナンス유지보수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오픈 / 통금시간	AM7:00 / AM0:00	오픈 전 외출은 전날까지 기숙사장에게 신청하세요. 부득이하게 통금시간에 늦을 경우, 반드시 기숙사장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연락 없이 통금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을 경우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 또는 경찰 등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실	AM7:00 ~ PM11:00	다른 기숙사생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대화에 신경 써주세요. 기숙사생 이외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탁실	AM7:00 ~ PM11:00	유료
접객실 면회	AM9:00 ~ PM10:00	로비 라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기숙사생의 룸	AM7:00 ~ PM11:00	이성의 기숙사실 출입은 엄금입니다.

## 3.운영관리에 대하여

생활지도 관련 문의는 소속 학교의 담당 부서입니다.

건물 시설에 관한 문의는 학원 본부 시설부입니다.

기숙사장 상주 관리·기숙사비 지불에 대해서는(株) 共立メンテナンス에 유지보수 업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기숙사 생활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기숙사장이 담당합니다.

#### 4. 일상생활 규칙에 대하여

- (1)입퇴실                   외출·귀가 시에는 반드시 입구의 IC 키 리더기에 각자의 IC 키를 대고 출입하십시오.  
여벌키를 만들거나 복사는 금지입니다. 만일, 분실이나 파손되었을 경우는 신속하게  
키를 분실했을 경우 기숙사장에게 신고 후 소정의 수속을 진행해 주세요.  
※재교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2)기숙사실 잠금장치   부재시에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현금이나 귀중품은 본인 책임으로 관리해 주세요.
- (3)쓰레기 처리           쓰레기는 규정대로 잘 분리하여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숙사장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방재훈련               소방법령에 의거한 방재훈련(대피훈련 등)은 반드시 참가해 주십시오.
- (5)안전·점검             방화 및 안전상 점검 등으로 기숙사장 입회 하에 관계자가 기숙사 실내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예방상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이외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석유난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숙사 내 창문에는 스토퍼가 달려 있습니다. 비상시 외에는 기숙사장의 허가 없이  
빠서는 안 됩니다.
- (6) 응급상황 화재·도난·기타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기숙사장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7)외박                   외박을 할 경우 반드시 전날까지 '외박신고서'를 기숙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외박은 귀국·일시귀국 이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 외박이 됩니다.  
(도미이오기는 기숙사생 앱에 「外泊届」「外泊友人」의 신청란이 있습니다만,  
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단 외박을 한 경우에는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 또는 경찰 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날 기숙사장으로부터 엄중히 주의를 기울여 소속 학교의 담당부서 및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8)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아르바이트 신고서」를 기숙사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학업 및 기숙사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통금시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학교에서 금지된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 (9)택배우편물           기숙사장이 대리로 받아서 보관을 합니다. 접수 시간 내에 인수하러 와주세요.  
냉장냉동제품택배 또는 착불 상품은 불가하오니 개인이 택배사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10)기숙사내모임 기숙사 내에서의 집회(모임)·포스터 등의 게시는 반드시 기숙사장의 허가를 얻어 주세요

(11)자전거        자전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는 기숙사장에게 '사용허가원'을 신고한 후 반드시 '자전거 허가 스티커'를 자전거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내 지정된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잠가주세요. 주차장에서의 장난이나 도난 등에 대하여 본 학원은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오토바이·원동기장치 등의 반입 및 탑승은 금지합니다.  
근린시설 주차장이나 노상 등에 주차·정차·방치도 해서는 안 됩니다.

## 5.금지사항

(1)민폐행위       실습실 등 공유 장소에 개인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분실한 경우는 본인 책임이 됩니다.  
실습실 등을 이용한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해 주세요.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이 금지됩니다.  
기숙사 실내에서도 주변의 방이나 인근 주민분들에게 폐를 끼칠만한 텔레비전의 큰소리, 큰소리의 대화는 자제하시고,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비상시 이외에는 베란다 출입이 금지됩니다. (도미이오기 제외)  
위법지정약물사용·폭력·도난 등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는 엄금입니다.  
애완동물류의 기숙사 내 반입 금지입니다.

(2)흡연           기숙사실 및 건물 내는 금연입니다. 흡연을 할 경우 매너를 지키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부탁드립니다.  
※기숙사실 및 실습실 등 공유 장소가 흡연으로 인한 냄새나 화상 등으로 오염된 경우 퇴관 및 수선비용등 실비 청구합니다.

(3)기숙사실 조작   기숙사 실내 및 실습실 등 공유 장소의 상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기구의 분리 등)  
※기숙사실 및 실습실 등 공유 장소의 벽이나 바닥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퇴관시에  
수선 비용 실비를 청구합니다.

(4)그 외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금전 거래는 하지 마세요.  
이성의 기숙사실 출입은 엄금입니다.  
음주는 개인 기숙사실을 제외하고는 금지입니다. 공유 장소에서 음주는 할 수 없습니다.  
※ 20세 미만의 흡연 및 음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습실에서의 식사는 금지입니다.

## 6.입관

- (1)위약금 「문화학원 학생회관 기숙사 계약서/입관 신청서/서약서」에 의해 자기 사정에 의한 기숙사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일	금액
기숙사신청서 제출일 부터 12월말까지	50,000 円
1월 1일 부터 1월 말까지	100,000 円
2월 1일 부터 2월 말까지	150,000 円
3월 1일 부터 3월 말까지	200,000 円

※입학사퇴, 비자부교부로 입국 불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퇴관

- (1)퇴관신청서 퇴학 등의 이유로 퇴관 하는 경우에는 퇴관일 1개월 전에 기숙사장에게 퇴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퇴학의 경우 소속 학교에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휴학의 경우 소속 학교에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관해야 합니다.
  - ③제적의 경우 신속히 퇴관해 주십시오.

- (2)위약금 개인 사정에 의해 중도 퇴관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기숙사비 2개월(퇴관신고서 제출일의 해당월과 익월)분입니다.  
(퇴학·휴학·제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만료월 퇴관 기한은 3월 20일이며 마지막 날이 20일입니다. 3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신입 기숙사생 입실 준비기간입니다. 반드시 기숙사 신고서는 기숙사 퇴관일 1개월 전에 기숙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관 시, 기숙사실 및 비품에 대해 반드시 기숙사장의 점검을 받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8.퇴관처분

- 「2.시설·설비등의 이용에 대하여」「4.일상생활 규칙」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 「5.금지사항」의 민폐행위에 거듭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
- 범죄행위를 한 경우
- 기숙사비 납부를 지정기일로부터 3개월 체납 시 (재기숙사 기간의 기숙사비는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東京都渋谷区代々木 3-22-1  
学校法人文化学園

文化学園大学・文化ファッション大学院大学・文化服装学院・文化外国語専門学校